



영국, 재해·질병·위험상황 발생 보고 규정 개정

2012년 4월 6일부터 영국의회에 의해 변경된 재해, 질병, 위험상황 보고 규정(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 : RIDDOR) 개정안이 적용. 기존에는 3일 이상의 상해(injury)를 입을 경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7일 이상의 장애(incapacitation,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작업을 할 수 없거나 결근을 한 경우)를 입은 경우로 변경됨.

RIDDOR(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재해, 질병, 위험 상황 보고 규정(RIDDOR)은 1994년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HSW Act)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이 규정은 작업장의 활동, 영국 연안의 정유, 가스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상황 등의 재해발생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규정은 개개의 사고에 대하여 HSE와 지자체에 발생 보고를 하고 관계당국에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험의 발생 장소와 경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작성하여, 재해,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조언 할 수 있도록 함.

보고 내용

- 보고 방법

웹사이트(www.hse.gov.uk/riddor) 또는 사고센터 전화



- 사망 보고

사업장의 작업 관련 또는 작업 외적인 모든 사망

- 주요 재해 보고

골절, 절단, 어깨 · 무릎 · 척추 탈골, 시력 상실, 눈에 화학물질 또는 고열에 대한 화상, 감전사고(무의식,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 호흡장애,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의식 불명, 의학적 조치를 요구하는 급성 질환 등

- 3일 이상 재해와 7일 이상 재해 보고

2012년 4월 6일부터 3일 이상의 재해에서 근로자가 7일 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로 수정됨. 이후 7일 이상의 연속된 날 동안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작업관련성 재해의 경우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3일 이상의 연속된 날 동안 근로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도 여전히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7일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한 보고는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함.

- 위험 발생 보고

리프트 등의 붕괴 전도, 용기 · 관 등의 폭발, 화물 컨테이너의 결함, 공중 전기선에 접촉,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만한 생물학적 인자의 사고성 누출, 기차와 다른 운송수단 간의 충돌, 위험 발생 보고(연안 작업 제외), 빌딩 · 구조물 등의 붕괴, 24시간 이상 일반적이지 않는 폭발 및 화재, 건강 장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사고성 유출 등

- 주요 질환 보고

증독, 피부암 등 피부 질환, 직업 천식 등 폐질환, 감염 질환 등